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⑤ 주거지전용 주차장 등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거지전용 주차장 등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자생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보조)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8조(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보조 및 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완공된 주차장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단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 3. 보조금을 돌려 주어야 할 자가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